

수원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274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정영주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윤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하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9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과 D 사이에 2020. 2. 20.경 체결된 20,000,000원, 2020. 2. 26.경 체결된 25,000,000원, 2020. 5. 28.경 체결된 100,000,000원, 2020. 6. 13.경 체결된 1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80,000,000원, 피고 B은 D에게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 9행을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2) D는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D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B 명의(O)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피고 B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20. 2. 20. 2,000만 원, 2020. 2. 26. 2,500만 원, 2020. 5. 28. 1억 원, 2020. 6. 13. 1,5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해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종국적으로 피고 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모두 D의 피고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D가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 돈을 옮긴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한 권리는 피고 B에게 있다.

나)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되는데(을 제4호증의 66 내지 72면 중 ‘적요(의뢰인등)’란이 P, Q, 피고 C, R, 해외송금 등으로 되어 있는 것), 이는 이후 환전되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B에게 송금되었다.1)

이 사건 송금행위 무렵에도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캐나다로 송금되고 있었는바(2020. 3. 1. R에게 송금된 1,800만 원, 20120. 3. 24. P에게 송금된 880만 원, 2020. 6. 29. S에게 송금된 900만 원 등), 이러한 자금 사용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행위로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종국적인 귀속처는 피고 B이라 할 수 있다.

다)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추가송금행위로 출금된 8,000만 원 역시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8,000만 원이 D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년경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에 약 2억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C은 2018. 3. 12. D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와 이자2)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으며, 피고 C이 이 사건 추가송금일(2020. 7. 24.) 이후 남은 7,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D가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위 8,000만 원이 D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5년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그대로 D 명의 계좌로 출금되어 D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되기는 하나, 2017년경 이후에는 그와 같은 입출금 거래가 크게 줄었다. 또한 D는 별도의 계좌, 즉 D 명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카드대금, 세금 등을 출금하는 거래를 하였다(을 제4호증 중 2 내지 26면 참조).

특히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로는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500만 원(2020.

6. 24.자)에 불과하고, D가 사용한 소액의 카드대금이 위 계좌에서 결제되었을 뿐인바, 적어도 이 사건 송금행위 무렵에는 명의자인 피고 B를 배제하고, 오로지 D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피고 B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D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 B에게 1억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 관한 판단

피고 C은, D에게 2018. 3. 12.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0. 7. 24. 위 대여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8,000만 원의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2424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전득자인 피고 C이 전득행위인 이 사건 추가송금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하는 취지로서 이는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선의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작성한 이메일에서는 ‘자금이 모자랄 때 장인어른(피고 C)께 상의 드렸고 장인어른께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 C은 D의 자금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피고 C이 D를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므로, 3) 피고 C은 D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될 것과 그 지급기일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 C이 8,0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D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시점과

근접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8,000만 원의 출처가 D가 송금한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라는 것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 스스로도 위 8,000만 원이 D가 피고 B 명의 계좌를 통해 보낸 돈임을 전제로 대여금 변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대하여 위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나 청, 판사 류희상

1) 피고들은 여러 사람에게 송금된 이유를 해외송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2022.

4. 21.자 준비서면 7면 참조),

2)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T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D는 2017. 6. 20.부터 피고 C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씩을 송금해오다가 1억 5,000만 원을 받은 이후인 2018. 3. 20.부터는 10만 원이 더 많은 4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10만 원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에는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다.

3) 피고들에 의하면 피고 C은 1937년생인데(2022. 10. 19.자 준비서면 4면 참조),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대리인의 성명은 ‘C’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다.

